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28)

2021. 12. 17.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828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조상호 의원 외 9명 발의
-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7조제2항제2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첨부)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①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제2호)
- 동 조례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제2항은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배치인력 중, 간호사의 실무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안 제7조제2항제2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생략)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2. ----- ----- 3년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시달한 「2021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요령 교육·홍보 사업계획서」에 간호사의 교육 강사(주강사) 실무기준이 3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겠음.

교육 강사	
주 강사 (이론 교육 및 교육운영 총괄)	보조 강사 (실습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li> <li>- 간호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li> <li>-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li> </ul> <p>* 단, 모든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li> </ul>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홍보 사업계획서

- 또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에서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부의 행정규칙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을 의미하며,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sup>2)</sup>.
- 특히,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장정지는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밖 심장정지 발생률이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4.3명(전체 21,905명)에서 2019년 인구 10만 명당 60.0명(전체 30,782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여전히 90%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상황임.
- 병원 밖 심장정지의 2/3 정도는 가정에서 발생하며, 길거리, 공공장소, 운동시설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하므로, 심장정지 생존율을 높이려면 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심장정지 상황에서의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한심폐소생협회(2021.12.03.). “심폐소생술이란?”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sup>3)</sup>.

- 다만, 우리나라는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률이 2008년 1.9%에서 2018년 23.5%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선진국 통계치인 39~43.6%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이는 긴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들이 환자에게 해를 입힐까 하는 두려움, 자신이 제대로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소심함,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 신체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성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임. 이에,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은 교육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장벽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sup>4)</sup>.

###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
- 우선, 관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에 명시된 간호사의 실무기준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3) 황성오, 차경철 등(2021).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소개. 주간 건강과 질병, 14(7), p.358~369.

4) 이미진, 신태용 등(2021). 제 9장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행가이드라인. 대한응급의학회지, 32(3),

으로, 입법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심장정지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율을 높이려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시민들이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sup>5)</sup>에 대한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문 의 처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가. 응급의료종사자
  -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